

대상약관	기존약관	변경 후 약관
	<p>[제3조] 리스기간</p> <p>1. 리스기간은 갑이 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함)을 가리키며, 리스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리스 실행일은 갑이 을에게 차량인수증을 교부하고 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간주한다. <b>인수증교부일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일을 실행일로 본다.</b></p> <p>2. 본 약관의 제17조 및 제18조, 제20조제2항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p> <p>[제4조] 차량의 구입, 인수 및 등록</p> <p>1. ~4. (현행과 동일)</p> <p>5.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p> <p>6. 을은 리스차량이 출고된 즉시 리스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리스차량을 을의 명의로 등록하며, 갑은 이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등록비용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은 을이, 그 외의 부분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p> <p>7. 만약 갑의 명의로 리스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갑은 등록과 동시에 을을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설정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또한 갑의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p> <p>8. 갑은 리스기간 개시전이라도 리스차량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신랄한 관리자로서의 보관책임 을 진다.</p>	<p>[제3조] 리스기간</p> <p>1. 리스계약은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p> <p>2. 리스기간은 "갑"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 이라고 함)이며, 리스실행일은 "갑"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한다.</p> <p>3. "을"은 "갑"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한다.</p> <p>4. 본 약관의 제17조 및 제18조, 제20조제2항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계약이 해지 되는 종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 차량의 구입, 인수 및 등록</p> <p>5.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p> <p>6. 을은 리스차량이 출고된 즉시, 리스차량을 을의 명의로 등록하며, "을"이 동의할 경우 "갑"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p> <p>7. 제6항에 따라 "을"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 비용은 "을"이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는 "을"이 "을"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는 "갑"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p> <p>8.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 등 제비용이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p> <p>9. "갑"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을"을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p> <p>9. "갑"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을"을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p>
	<p>[제5조] 리스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p> <p>1. 을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2. 차량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차량의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p> <p>3. 제2항의 경우 을은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p> <p>4. 갑이 리스차량의 인도지연, 하자 등 사용 또는 점유를 중단하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을이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서를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이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채무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p>	<p>[제5조] 리스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p> <p>1. "갑"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2. 제1항의 경우 "을"은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p> <p>3. "갑"은 제4조에 따라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자동차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을"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다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그 사유가 해소될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다.</p> <p>4. "을"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갑"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을"은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갑"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칙금 등 "을"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1조] 리스차량의 유지, 비용 및 제세공과금</p> <p>1. ~3. (생략)</p> <p>4. 리스차량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칙금 포함)은 갑이 부담한다.</p> <p>5. 리스계약 및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등록세, 취득세, 공제대입액 및 할인비용,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과태료 및 벌칙금을 포함한다.</p>	<p>[제11조] 리스차량의 유지, 비용 및 제세공과금</p> <p>1. ~3. (현행과 동일)</p> <p>4. 자동차의 구입, 인도, (삭제),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p> <p>5. 리스계약 및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삭제),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등록세 삭제), (취득세 삭제), 공제대입액 및 할인비용,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과태료 및 벌칙금을 포함한다.</p>
리스계약서	<p>[제21조] 반납차량 평가</p> <p>1. "갑"이 본 계약에 의해 리스차량을 반납한 경우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이 지정된 평가기관을 통하여 반납차량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여 (별첨 "차량평가 및 감가기준" 참조) 평가결과 "을"이 별도로 규정한 감가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갑"은 감가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제25조] 지연배상금</p> <p>1. "갑"이 리스료 등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을"이 "갑"을 위하여 대담한 비용의 지급을 연체하는 때, "갑"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대담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원체일까지의 기간동안 위 금액에 대해 리스계약서 기재의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들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제21조] 반납차량 평가</p> <p>1. "갑"이 이 계약에 의해 리스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이 지정된 평가기관은 반납차량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갑"에게 자동차 평가금을 교부하며, 별첨 "차량평가 및 감가기준"에서 정한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갑"에게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한다.</p> <p>[제25조] 지연배상금</p> <p>제1항 "갑"이 리스료 등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을"이 "갑"을 위하여 대담한 비용의 지급을 연체하는 때, "갑"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대담 비용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체일까지 한한날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위 금액에 대해 리스계약서 기재의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들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 연체일수를 산정할 경우 결재일 다음날과 화요일 중 하루를 포함</p>
	<p>제34조 (반제출당)</p> <p>"갑"이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변제액이 "갑"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을"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에 중앙하기로 한다.</p>	<p>[제34조] &lt;삭 제&gt;</p>
	<p>[제35조] (권리의 양도 및 승계)</p> <p>제1항~제2항 (생략)</p>	<p>[제34조] (권리의 양도 및 승계)</p> <p>제1항~제2항 (현행과 같음)</p>
	<p>[제36조] (약관의 변경)</p> <p>(생략)</p>	<p>[제35조] (약관의 변경)</p> <p>(현행과 같음)</p>
	<p>[제37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p> <p>제1항~제2항 (생략)</p>	<p>[제36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p> <p>제1항~제2항 (현행과 같음)</p>
	<p>[제38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p> <p>(생략)</p>	<p>[제37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p> <p>(현행과 같음)</p>
	<p>[제39조] 관할법원</p> <p>본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을"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p>	<p>[제38조] 관할법원</p> <p>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 병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을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을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p>
	<p>&lt;별첨2&gt; 자동차계약이체약관</p>	<p>&lt;별첨1&gt; 자동차이체약관</p>
	<p>7. 제1항의 자동차계약이체일에 귀사 및 다른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개의 자동차계약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해당 계약개설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까.</p>	<p>7. 제1항의 자동차계약 이체 일에 귀사 및 다른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개의 자동차계약이체청구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해당 계약개설금융기관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겠습니까.</p>
	<p>&lt;매매발주계약서&gt;</p> <p>[제4조] 물건의 인수</p> <p>차량 인수(성능보전을 위한 시운전 포함)는 을 및 병의 책임하에 모든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 차량의 인수가 끝나는 즉시 병은 갑이 정하는 차량인수증을 갑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b>단, 차량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차량이 등록된 이상 차량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하며, 병은 차량의</b></p>	<p>&lt;매매발주계약서&gt;</p> <p>[제4조] 물건의 인수</p> <p>차량 인수(성능보전을 위한 시운전 포함)는 을 및 병의 책임하에 모든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 차량의 인수가 끝나는 즉시 병은 갑이 정하는 차량인수증을 갑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b>&lt;단서조항 삭제&gt;</b></p>
	<p>&lt;자동차 매매발주계약서&gt;</p> <p>[제12조] 합의관할</p> <p>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 병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p>	<p>&lt;자동차 매매발주계약서&gt;</p> <p>[제12조] 합의관할</p> <p>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 병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을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을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p>
대상약관	기존약관	변경 후 약관
할부금융계약서	<p>&lt;별첨1&gt; 자동차이체약관</p> <p>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차계약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까.</p> <p>&lt;자동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gt;</p> <p>2. 본 근저당권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수리, 정비 또는 개조, 기타사유물로서 부가, 증축될 제 장치, 기계, 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p>	<p>&lt;별첨1&gt; 자동차이체약관</p> <p>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차계약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해당 계약개설금융기관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겠습니까.</p> <p>&lt;자동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gt;</p> <p>제2항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증축에도 미칩니다.</p>